

보도 일시	2022. 6. 23.(목) 06:00 2022. 6. 23.(목) 석간	배포 일시	2022. 6. 23.(목) 06: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손필훈 (044-202-8682)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권기준 (044-202-8814) 정상은 (044-202-8815)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 각 지자체장은 상반기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후 개선 조치 해야 -

-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사천시청), 분노 수거·운반 중 사고(용산구청),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강서구청)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 *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가능('21년 11월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22년 1월 시행)
-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붙임1]

-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 ③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5건)과 끼임(3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 수행사업: 추락(1), 끼임(1), 깔림(1), 화재(1)
발주공사: 추락(5), 끼임(3), 부딪힘(1), 맞음(1), 깔림(1)

[수행사업 사고 유형]

연번	작업 유형	사고 개요
1	벌목작업	벌목작업 중 나무에 깔림
2	분뇨 수거·운반작업	차량과 벽 사이에 끼임
3	설비점검·보전작업	3층 바깥벽에 설치된 CCTV 점검 중 추락
4	공원, 조경 관리	트럭에 적재된 양수기에서 화재 발생

-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라면서,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 라고 밝히고,
 -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 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1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최초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22.6.30.까지 이루어져야 함)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5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 기관명 :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o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등 업무 시) -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총괄				
o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o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등				
o안전관리자(위탁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o보건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o산업보건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내부 절차에 따른 실시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 참여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공지 - 기타				
○실시 시기 및 대상의 적정성 - 정기평가: 매년(계획에 따른 시기), 전체 작업 대상 - 수시평가: 아래 계획 실행 전 <수시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본부 전담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방법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시 총괄·관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보좌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적정성 -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유해·위험요인 파악 누락이 없는지 확인				
○유해·위험요인 개선 수준 -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 개선여부 확인				

4. 종사자 참여 활성화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내부 절차 운영 기반 - 익명 신고함 설치 상태 - 내부 직원에 참여절차 안내				
○제안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제안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아차사고 발굴 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수행한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록·관리				
o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적정기간 기준 준수				
o도급·용역·위탁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 적정기간 보장 등				
o도급·용역·위탁 완료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평가결과 환류)				

6.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신속 대응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대응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o비상조치계획에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및 비상상황 발생별로 구분하여 수립				
o비상조치계획에 소속기관 근무환경 상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o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				
o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o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				
o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o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				
o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				

7.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o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o안전보건관리체계(내부 절차·기준·매뉴얼) 교육				

8.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관리체제	○ 안전보건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부여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 고지 등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산재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제출)				
	○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	○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적으로 회의 개최)				
	○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1회/주)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분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와 근로자 각 1명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수급업체 위생 시설 설치 또는 이용				
건설업 등 산업 재해 예방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기본 안전보건대장 수립 및 이행 확인) * 50억원 이상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50억원 이상)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사용 시 안전인증 취득 여부 *크레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등				
	○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경고표지 부착·교육 실시				
	○ 석면함유 물질 자재에 대한 석면조사				
	○ 석면함유 물질 자재 해체제거작업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도급 여부)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기준	○작업장 및 통로 전도방지 조치 여부 * 미끄럼방지 조치(논슬림테이프 부착) 설치, 바닥 청결, 조도확보 등			
	○안전한 사다리 통로 확보 * 견고한 구조, 전도방지 조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등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및 덮개 등 설치 여부			
	○높은 곳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여부 - 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 조립, 이동식비계, 말비계 사용			
	○승강기 보수 작업 등 * 방호장치(출입문 인터록 장치 등) 정상 작동, 작업 시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포지판 부착 후 작업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건관리 * 사전허가(프로그램 작성), 출입금지 표지판,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감시인배치 등			
	○외벽 청소업무 * 작업전 로프, 고리, 말비계 등 체결상태 확인, 로프 외 구멍줄 설치 후 안전대 체결, 로프 및 구멍줄			
	○추락 등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위험기계 등의 전동기 회전체 등에 덮개 설치 여부			
	○전동기 콘센트 등 접지 연결 여부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일자	점검자		

2021-사업총괄본부-706

안전은 권리입니다

작은 설비에 기여도,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망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사망한 10명 중 5명은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

* 최근 5년간 1주일에 2명씩, 총 520명이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

지금 바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재해 사례

끼임 재해	<p>1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청소하다 가슴이 끼여 사망</p>	<p>2 움직이는 설비에 작업복이 걸린 후 머리가 끼여 사망</p>	<p>3 제품 검사 중 산업용 로봇과 제품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p>
	<p>1 1.2m 높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p>	<p>2 1.5m 높이 자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p>	<p>3 사다리로 내려가다 2.4m에서 떨어져 사망</p>
	추락 재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할 사항

<p>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p> <p>① 점검 수리 중 전원 차단 ②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③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p>	<p>끼일 수 있는 곳 방호조치</p> <p>① 동력기계,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② 방호장치 해제 금지 ③ 동작중인 기계에 직접 접촉 금지</p>	<p>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p> <p>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② 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p>	<p>개인보호구 착용</p> <p>① 안전모: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② 안전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안전화: 끼임, 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p>
---	---	---	---

콘텐츠 링크

※자료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안전보건자료실

검색

'끼임' 또는 '추락' 또는 'VR' 등 입력

포털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 입력 또는 주소창에 <https://www.kosha.or.kr> 입력

끼임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명 :
 점검일자 :
 점검자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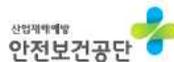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2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방호장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 해제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가?		
4	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에 대한 방지장치(덮개, 울 등 설치)는 적정한가?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였는가?		
6	사용 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대상작업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시 조치절차 ① 해당 설비 등의 운전정지 ②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③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7	기계·기구 또는 설비 사용 중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8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갖춘 지게차를 자격 보유자가 조종하는가?		
9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추락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명 :
 점검일자 :
 점검자명 :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바닥면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튼튼하게 설치하였는가?		
4	안전난간 부착이 곤란한 경우(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시작 전 반드시 점검하는가?		
6	선라이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폭 30cm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는가?		
7	달비계 작업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① 안전대 및 수직 구멍줄 설치 ② 작업용 로프 결속 및 고정부 상태 ③ 로프 파손 및 접촉부 마모상태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붙임4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 전 안전점검(TBM)! 생명을 지킵니다.

1위 단부·개구부 떨어짐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2위 철골 떨어짐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3위 지붕 떨어짐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4위 비계·작업발판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5위 굴착기 부딪힘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6위 고소작업대 떨어짐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7위 사다리 떨어짐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8위 달비계 떨어짐



구멍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멍줄, 작업줄)

9위 트럭 부딪힘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10위 이동식 비계 떨어짐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11위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12위 이동식크레인 맞음



인양물 고정 철제
하부 출입통제